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52 발의연월일: 2023. 2. 10.

발 의 자:이양수·김성원·안병길

박덕흠 · 홍문표 · 윤창현

정경희 · 최춘식 · 지성호

노용호 · 정희용 의위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 제2조(「농약관리법」의 개정) 농약관리법(법률 제1825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신청"을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제3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이의신청)"을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 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제4조(「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을 받거나 받은"을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거나 한"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업 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는"으로, "협의하여야"를 "미리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촌융 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 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 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지구 지정의 효과)"를 "(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 제10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승인하려면"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의2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

- 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승인하고자 하는"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본문 중 "협의"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항 중 "제8조"를 각각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제7항·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초지법」의 개정)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이 있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인가 등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 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조(「초지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인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u>실</u>	<u>실</u>
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 변
<u>받은 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허	경승인을 받은 경우
가・인가・지정・승인・협의・	
해제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	
라 <u>한다)</u> 을 받거나 한 것으로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	품부장관이 허가등 관계 행정기
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
으로 본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②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u><</u> 후단 삭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제26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 제26조(이의신청 특례) <삭 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제8조의2 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제13조제1항(제8조의 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 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17 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 17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 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등록 신청서류를 반 려받은 경우 2. 제14조제1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 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변경등록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인이나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신 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u>제3항</u>에 따라 심사 결과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

<u>1</u>	<u>o</u>]	법에	따른
<u> 처분에 대한</u>			
<u>②</u>	<u>o</u>]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	<u>청</u>	
<u>③</u>	<u>제</u> :	<u> 2항</u>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부 기(附記)하여야 한다.

<신 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 <u>(이의신청)</u> ① ~ ③ (생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
략)	<u>한 이의신청 특례)</u> ① ~ ③ (현
	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
	한다)에 따른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제17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	의제) ①
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때(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를 말한	
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	
가・승인・신고・등록・협의・	
동의・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u>한다)을 받거</u>	한다)에 관하
<u>나 받은</u> 것으로 보며, 제16조제	<u>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u>
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	해당 인·허가등을 받거나 한 -
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u><삭 제></u>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1항 각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해당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 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 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 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u>②</u>			
	 દ્રોનો	<후단	사
제>	<u>인디</u> .	<u>\TU</u>	
<u>_ 1/2</u>			

③ 제2항
<u>제1항</u>

<u>⑤</u> (생 략)	<u>④</u> (현행 제5항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 ② (생 략)	<u>등의 의제)</u>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3
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를 한 <u>경우에는</u> 다음 각 호의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u> 거친 사항은</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u>다.</u>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 ③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	<u><</u> 삭 제>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	
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u>할 수 있다.</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
	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u>다.</u>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	①
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	
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	
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	
·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	
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u>제3항</u> 에 따라 관계 행정	<u>제2항</u>
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u>대</u>	<u>प</u>
<u>하여는</u>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u>해서는</u>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	
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	
으로 본다.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	<u><삭 제></u>
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	

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 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 으로 본다.

1. ~ 14. (생 략)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 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 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 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 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 다)에 관하여 시장 • 군수가 허 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4. (현행과 같음)

②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 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 축법 |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를 할 때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 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등 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 은 것으로 본다.

- 1. ~ 8. (생 략)
-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 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 당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 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 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 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 7. (생략)
- ④ 시장·군수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 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 8. (현행과 같음)
- ③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 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 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 • 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 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sim	7.	(현	. 행	과	같	음)				
4	<u>시</u>	장	• ਹੋ	'수	는						
											- —
											- —
					미	리	협	의	하-	여 (<u> </u>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 <후단 삭제>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인가 • 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런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 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 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 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 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 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 받은 것 으로 본다. 1. ~ 19. (생 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

	개	정	안		
네9조(다	른 법	률에	따른	허가	등
의 의저	1) 1				
				림축신	
품부장	관 또	는 시]장・	군수가	_

1. ~ 1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 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융복 합산업 사업자 인증 또는 농촌 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 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 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31조에 따라 지구가 지정 • 고시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1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 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 의제되는 허가등을 해당 행정기 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2조(지구 지정의 효과) ① 제 제32조(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① -----

된 경우 그 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 수립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 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 요 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

1. ~ 6.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 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u>"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u> <u>으로 본다.</u>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u><삭 제></u>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	
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	
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u>야 한다.</u>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	<u>②</u>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u>승인하려면</u> 해	<u>승인 또는 변경</u>
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u> 승인하려면</u>
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관계 행정</u>	<u><후단 삭제></u>
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은 협	
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u>없는 것으로 본다.</u>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
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
	승)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	
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	
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	
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이 경우</u>	<u><</u> 후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	<u>삭제></u>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	
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	
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	
<u>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 (생 략)	가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u>승인</u>	<u>승인</u>
<u>하고자 하는</u> 경우에는 사업시행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관</u>	<u><후단 삭</u>
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u>제></u>
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u>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u>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	2
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	
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u>협의</u> 하여야 한다.	협의(제8조제1항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
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	<u> 함한다)</u>
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	
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u>.</u>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	4
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	
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u>제8</u>	<u>제</u> 8
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9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지의 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 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 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 10. (생 략) <u><신 설></u>

제8조제1항
제8조 <u>(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u>
등의 의제) ①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
여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인 ·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u>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거나</u> 한
<u>인</u> 1. ~ 10.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
• 제7항 · 제9항 및 이 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
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

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제20조(허가 · 인가 등의 의제) ① 제20조(허가 · 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 가 · 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

행

혀

1. ~ 6. (생 략)

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 인가 등 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 조성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 정 아

- ---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 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 · 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 인 가 등을 받은 ---.
 - 1. ~ 6.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 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

<삭 제>